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1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소병훈 · 허 영 · 김교홍
박 정 · 박희승 · 민형배
이인영 · 안태준 · 윤준병
최혁진 · 이개호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의결과 회의록 등”를 “의결”로, “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을 “제2항을”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議事)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과 그 반대이유
7. 그 밖에 의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회의) ① ~ ④ (생략) ⑤ 이사회는 통신수단에 의한 <u>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 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u> <u><신 설></u>	제19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의결</u>----- -----제2항 <u>을</u>-----. <u>제19조의2(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u> <u>1. 개의 ·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u> <u>2. 안건</u> <u>3. 의사(議事)</u> <u>4. 출석한 임원의 성명</u> <u>5. 표결수</u> <u>6.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과 그 반대이유</u> <u>7. 그 밖에 의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u>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